

### 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명 기재】**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다우데이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비용 및 그 대금의 지급결제비용 규정함에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구입 또는 출력을 이용할 때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페이조아 : 신용카드 결제, KT 전자결제, 롯데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산결제,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3. 페이조아 시스템 : “을”이 페이조아를 위하여 결제기관 및 증권사와 연동하여 결제·결제하는 결제 및 지불 통계를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4. 이용자 :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가맹점 :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오픈마켓 상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한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 기타 재화 또는 물건인 것을 말한다.

- 가. 디지털 콘텐츠 상품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 나. 실물 상품 :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7. 결제기관 및 증권사 :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이통통신사, 유선통신사, 은행, 결제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거래승인기관을 결제기관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를 포함사라 한다.
8. 실·지급결제 : 동일한 이용자에게 매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기관 및 증권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이용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서비스 수수료 :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부가하여 적용하는 ‘부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11. 정산 : 페이조아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금정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에스프레소서비스 : 이용자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정산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현금결제 수단(계좌이체 및 가산결제)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신용카드 ARB 서비스 : “가맹점”이 ARB를 이용하여 정산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정합한 페이조아를 결합한 정합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 (서비스 이용 조건)

1.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업무와 관련하여 주축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유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유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

- 행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페이조아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기관 및 증권사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초차지연 기타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조치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가하여야 한다.
3. “갑”은 이용자가 구매할 상품 등을 찾을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송금방법을 위반하거나 금액결산, 미결제 금액을 정하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갑”이 정합을 위반한 경우 결제기관 및 증권사 및 “을”은 승인, 정산 및 기타 금융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추속할 수 있다.
5. “갑”은 불법 또는 사형사유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6. “갑”의 페이조아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게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게시 시점에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통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일의로 추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 제4조 (“갑”의 책임과 의무)

1. “갑”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판매장을 개설, 관리한다.
2. “갑”은 페이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로 한 것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종료로 페이조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의 사이트에 페이조아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갑”은 페이조아 이용, 정산을 위하여 “을”이 요구하는 고객 정보, 상품정보 등(“갑”의 허가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맹점의 정보 포함)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갑”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취소, 환불, 이의제기를 제반 고충 처리를 담당한다. 단, 취소, 환불, 이의제기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6. “갑”은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 거래대상 상품, 거래금액, 이용자에 관한 정보, 거래일시 등 거래기록과 이를 일괄할 수 있는 문송장, 수납증을 일괄자료로 최소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거래기록 및 일괄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을”은 불법거래를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문판매유형에관한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의피해보상책임과사실 등의 책임을 지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8. “갑”의 상품 등의 내용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9. “갑”은 유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법령의항과 전자거래의 지침 등에 준거 준수하여야 하며, 당 기에서 정한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명 기재】**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다우데이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비용 및 그 대금의 지급결제비용 규정함에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구입 또는 출력을 이용할 때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페이조아 : 신용카드 결제, KT 전자결제, 롯데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산결제,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3. 페이조아 시스템 : “을”이 페이조아를 위하여 결제기관 및 증권사와 연동하여 결제·결제하는 결제 및 지불 통계를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4. 이용자 :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가맹점 :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오픈마켓 상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한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 기타 재화 또는 물건인 것을 말한다.

- 가. 디지털 콘텐츠 상품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 나. 실물 상품 :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7. 결제기관 및 증권사 :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이통통신사, 유선통신사, 은행, 결제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거래승인기관을 결제기관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를 포함사라 한다.
8. 실·지급결제 : 동일한 이용자에게 매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기관 및 증권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이용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서비스 수수료 :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부가하여 적용하는 ‘부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11. 정산 : 페이조아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금정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에스프레소서비스 : 이용자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정산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현금결제 수단(계좌이체 및 가산결제)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신용카드 ARB 서비스 : “가맹점”이 ARB를 이용하여 정산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정합한 페이조아를 결합한 정합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 (서비스 이용 조건)

1.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업무와 관련하여 주축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유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유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

# 도장

사. "간"이 위·변조에  
생시키거나 그의  
영위 마술을 발  
아. "간"이 자신이  
살, 도박 등 사  
게 제공하거나 기  
자. 가압점  
이의제기, 취소 및  
간 거래관계에  
차. 합동  
의심되는 경우(소  
"을"의 사정  
○ "을"에게  
㉘ 상품  
2. 본 계약과  
"을"의 승  
불지 없이  
3. 수  
자에 대한  
4. "을"이  
여 강제  
5. "간"이  
다  
가. 점  
나. 페  
다. 거  
라. 계  
마. 기

금계산서를  
발생되는  
4. "간"을  
정 불  
5. "간"이  
및 세  
니하며, 본  
권을 계약  
기간 합  
차. 합  
의심되는  
가. "을"  
○ "을"에  
㉘ 상품  
2. 본 계약과  
"을"의 승  
불지 없이  
3. 수  
자에 대한  
4. "을"이  
여 강제  
5. "간"이  
다  
가. 점  
나. 페  
다. 거  
라. 계  
마. 기

# 도장

사. "간"이 위·변조에  
생시키거나 그의  
영위 마술을 발  
아. "간"이 자신이  
살, 도박 등 사  
게 제공하거나 기  
자. 가압점  
이의제기, 취소 및  
간 거래관계에  
차. 합동  
의심되는 경우(소  
"을"의 사정  
○ "을"에게  
㉘ 상품  
2. 본 계약과  
"을"의 승  
불지 없이  
3. 수  
자에 대한  
4. "을"이  
여 강제  
5. "간"이  
다  
가. 점  
나. 페  
다. 거  
라. 계  
마. 기

금계산서를  
발생되는  
4. "간"을  
정 불  
5. "간"이  
및 세  
니하며, 본  
권을 계약  
기간 합  
차. 합  
의심되는  
가. "을"  
○ "을"에  
㉘ 상품  
2. 본 계약과  
"을"의 승  
불지 없이  
3. 수  
자에 대한  
4. "을"이  
여 강제  
5. "간"이  
다  
가. 점  
나. 페  
다. 거  
라. 계  
마. 기

## 도장

를 둘 취소 요청 내역  
에게 처리한다.

11. 이용자가 본인 미 사용  
이나 둘을 미 배출 둘을  
"갑"의 확인과 비유으로  
한다.
12.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거래대금  
의 과점에서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대금에  
대하여 "을"을 "갑"에게 갹산하지 않는다.
13. "갑"과 "을"이 별도 정한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 정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갑"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에 대해 해당  
거래 발생 후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기관 및 회원사의  
거래대금 할부자로 신분 좌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거래대금을 할부한 건  
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15. 이용자가 불법 거래된 카드상품을 이용하여 페이조아를 이용하  
거나, 카드상품 장 등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일으킨 경우 "을"  
은 "갑"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16. "갑"과 "을"은 이용자의 모든 이의제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  
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산출 협조하여야 한다.
17.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과다하게 발생하거  
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연으로 통지  
하고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대금 지급의 보류).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가. 법령, 수사기관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  
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유선정통을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등 또는 유선정통  
을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이 추후 결제 골점을 검지해 음 정통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 제14조 (신용카드 결제 특약).

1.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발생한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설 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신용카드 구입자 또는 이븐트  
등의 행사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  
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대금이 할부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알  
려 주거나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4. 가맹점별할부기 한부 등 할부 거래와 관련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확인자  
지 아니한다.
5.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페이조아 가맹 점  
정보를 결제기관 및 회원사에 제출할 수 있다.
6.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취심, 적발심, 무효  
심 여부를 검출해야 한다.
7.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적정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무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계 법령 준수 및 불법·반칙 대응 방지 등 본 계  
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명  
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할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 도장

를 둘 취소 요청 내역  
에게 처리한다.

11. 이용자가 본인 미 사용  
이나 둘을 미 배출 둘을  
"갑"의 확인과 비유으로  
한다.
12.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거래대금  
의 과점에서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대금에  
대하여 "을"을 "갑"에게 갹산하지 않는다.
13. "갑"과 "을"이 별도 정한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 정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갑"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에 대해 해당  
거래 발생 후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기관 및 회원사의  
거래대금 할부자로 신분 좌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 및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거래대금을 할부한 건  
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15. 이용자가 불법 거래된 카드상품을 이용하여 페이조아를 이용하  
거나, 카드상품 장 등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일으킨 경우 "을"  
은 "갑"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16. "갑"과 "을"은 이용자의 모든 이의제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  
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산출 협조하여야 한다.
17.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과다하게 발생하거  
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연으로 통지  
하고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대금 지급의 보류).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가. 법령, 수사기관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  
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유선정통을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등 또는 유선정통  
을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이 추후 결제 골점을 검지해 음 정통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 제14조 (신용카드 결제 특약).

1. 페이조아를 이용하여 발생한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설 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신용카드 구입자 또는 이븐트  
등의 행사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  
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대금이 할부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알  
려 주거나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4. 가맹점별할부기 한부 등 할부 거래와 관련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확인자  
지 아니한다.
5.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페이조아 가맹 점  
정보를 결제기관 및 회원사에 제출할 수 있다.
6.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취심, 적발심, 무효  
심 여부를 검출해야 한다.
7.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적정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무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계 법령 준수 및 불법·반칙 대응 방지 등 본 계  
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명  
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할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 도장

를 증명하는 부분의

3. "갑"이 본 계약에 따
4.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된

### 제16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1.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당 등으로 이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
2. "갑"이 피이조자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3.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충분한 이종자 및 상대방에 대한
4. "을"은 "갑"과 이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
5.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
6.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과

### 제20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발이 기일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의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 제2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서 본

-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 나.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에게 승
- 다.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
- 라.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립하거나 통지한 것과
- 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월이 더 이상

### 제23조 (분쟁의 조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

를 증명하는 부분의

3. "갑"이 본 계약에 따
4.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된

### 제16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1.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당 등으로 이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
2. "갑"이 피이조자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3.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충분한 이종자 및 상대방에 대한
4. "을"은 "갑"과 이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
5.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
6.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과

# 도장

### 제20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발이 기일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의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 제2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서 본

-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 나.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에게 승
- 다.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
- 라.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립하거나 통지한 것과
- 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월이 더 이상

### 제23조 (분쟁의 조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

"관"과 "음"을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용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관"과 "음"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1년 06월 02일

[관]	[음]
주 소, [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북악로 311, 5층, 11층
[ ]	[ (법인명, 대표스케어) ]
상 호, [ ]	상 호, 주식회사 다우데이터
대표이사, [ ]	대표이사, 김 박 장 (인)

도장

도장

"관"과 "음"을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용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관"과 "음"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1년 06월 02일

[관]	[음]
주 소, [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북악로 311, 5층, 11층
[ ]	[ (법인명, 대표스케어) ]
상 호, [ ]	상 호, 주식회사 다우데이터
대표이사, [ ]	대표이사, 김 박 장 (인)

도장

도장



종소3.		[ 0 ]	%.	[표 1] . 신용카드(국내), 점심기준 동일.	[표 1] . 신용카드(국내), 점심일 동일.	[연구비카드]
종소2.		[ 0 ]	%.			
종소1.	3	[ 2.40 ]	%.			
업세.	3억원 미만.	[ 1.8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의13에 따른 업세/종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무대수수료를 적용함.  
\* 국제화 과제자료(과제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업세/종소가맹점 해당 여부(무대수수료를 적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제2조 (휴대결제 선 점선에 따른 특약).**
- 본 조는 "갑"과 "을"이 휴대결제에 대하여 선 점선 방식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 미 수납을 대비하여 "갑"은 "을"에게 유보금을 지급한다. 유보금은 휴대결제 금액에 본 부칙 제1조의 유보금 [5%]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점선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갑"과 "을"은 [6]회차 수납 시점에 그 때까지 미 수납된 금액과 누계된 유보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점선하고, 상계 후에도 미 수납된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갑"은 점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미 수납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제3항에 따라 미 수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수납된 금액이 모두 원납될 때까지 후속의 점선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다음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점선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수수료, 점선 방식 또는 유보금을 변경할 수 있다.
    - "갑"의 [6]회차 수납금이 [50%] 미만일 경우.
    - "갑"의 [6]회차 수납 시점에서의 미수금이 본 부칙 제1조의 유보금 [5%]보다 높을 경우.

- 제3조 (신용카드 ARB 서비스 신청에 따른 특약).**
- 본 조는 "갑"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ARB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갑"이 신용카드 ARB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는 ARB 이용 수수료 및 BMB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항 목	금액(부가세 별도)	비 고
ARB 이용 수수료	[ 0 ]%	- 신용카드 결제 점선 시 점선대금에서 공제.
BMB 사용료	[ 0 ]원/건	- 별도 청구.

3. "을"은 매출(M월) 발생되는 BMB 건수를 산정하여 익월(M+1월) [5] 영업일 이내에 세무계산서를 발행하여 BMB 사용료를 "갑"에게 청



종소3.		[ 0 ]	%.	[표 1] . 신용카드(국내), 점심기준 동일.	[표 1] . 신용카드(국내), 점심일 동일.	[연구비카드]
종소2.		[ 0 ]	%.			
종소1.	3	[ 2.40 ]	%.			
업세.	3억원 미만.	[ 1.8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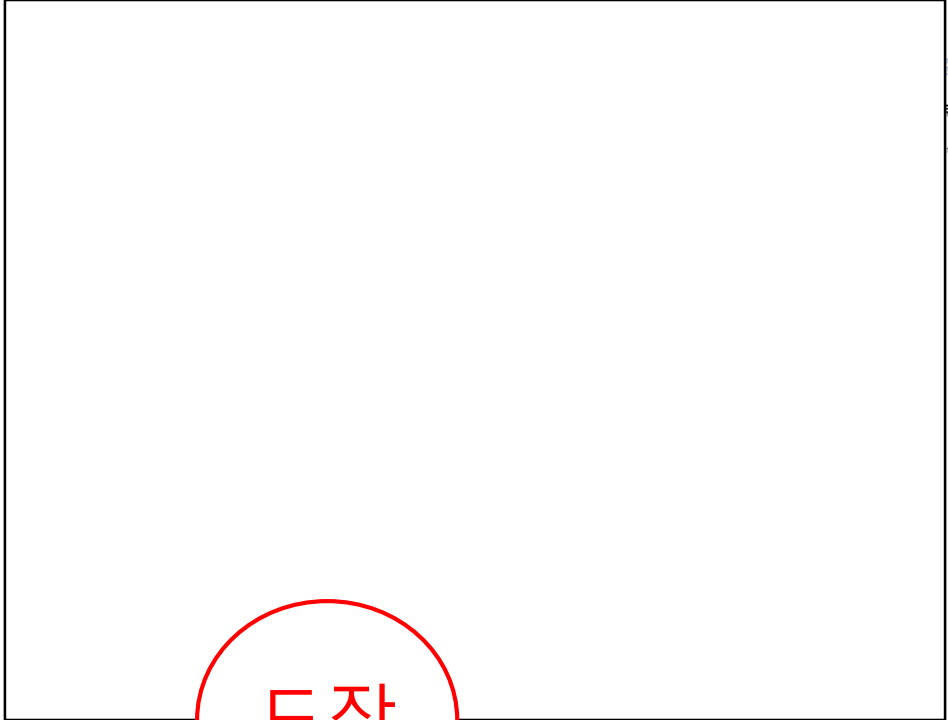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의13에 따른 업세/종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무대수수료를 적용함.  
\* 국제화 과제자료(과제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업세/종소가맹점 해당 여부(무대수수료를 적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제2조 (휴대결제 선 점선에 따른 특약).**
- 본 조는 "갑"과 "을"이 휴대결제에 대하여 선 점선 방식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 미 수납을 대비하여 "갑"은 "을"에게 유보금을 지급한다. 유보금은 휴대결제 금액에 본 부칙 제1조의 유보금 [5%]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점선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갑"과 "을"은 [6]회차 수납 시점에 그 때까지 미 수납된 금액과 누계된 유보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점선하고, 상계 후에도 미 수납된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갑"은 점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미 수납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제3항에 따라 미 수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수납된 금액이 모두 원납될 때까지 후속의 점선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다음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점선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수수료, 점선 방식 또는 유보금을 변경할 수 있다.
    - "갑"의 [6]회차 수납금이 [50%] 미만일 경우.
    - "갑"의 [6]회차 수납 시점에서의 미수금이 본 부칙 제1조의 유보금 [5%]보다 높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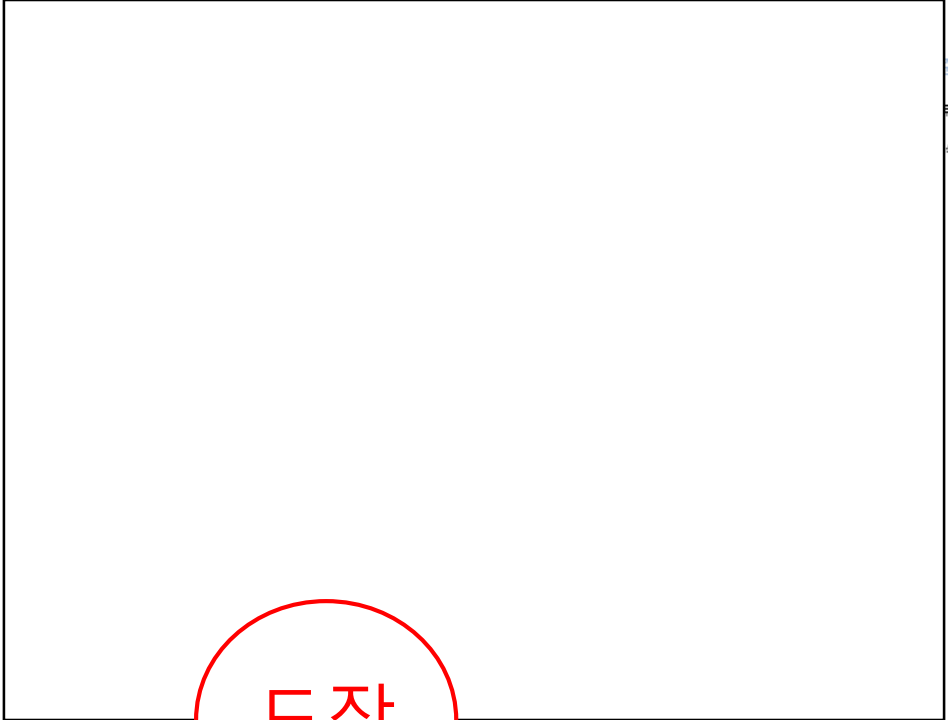
- 제3조 (신용카드 ARB 서비스 신청에 따른 특약).**
- 본 조는 "갑"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ARB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갑"이 신용카드 ARB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는 ARB 이용 수수료 및 BMB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항 목	금액(부가세 별도)	비 고
ARB 이용 수수료	[ 0 ]%	- 신용카드 결제 점선 시 점선대금에서 공제.
BMB 사용료	[ 0 ]원/건	- 별도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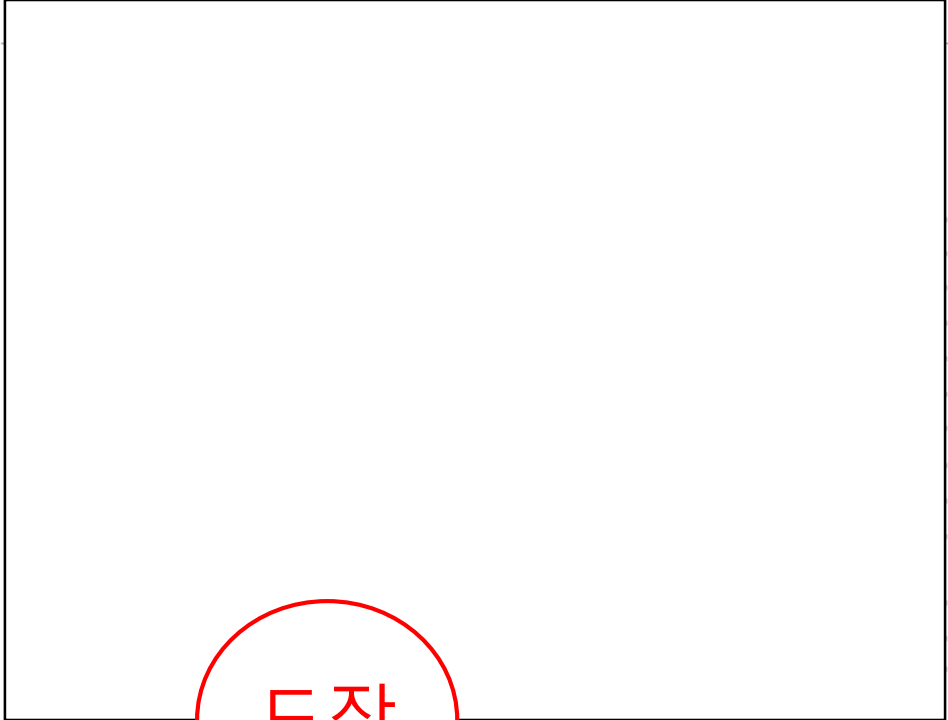
3. "을"은 매출(M월) 발생되는 BMB 건수를 산정하여 익월(M+1월) [5] 영업일 이내에 세무계산서를 발행하여 BMB 사용료를 "갑"에게 청



도장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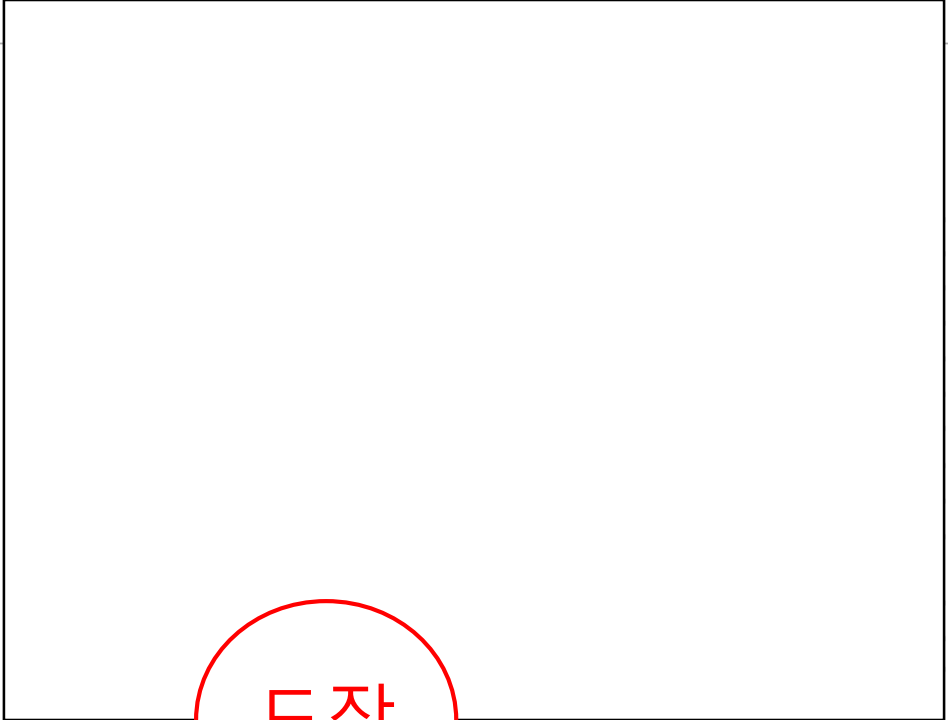
도장

3. 서비스등록정보	
상품 상세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과세,
신출 결제수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소액결제 <input type="checkbox"/> 카카오페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품권류 <input type="checkbox"/> 모바일결제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동전(KT결제통),

4. 비용납부 및 한도 정보 (※ 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1) 추가가입비 (VAT 포함),	[2만원,]	2) 연 사용료 (VAT 포함),	[1만원,]
3) 지급이행 보증보험,	[1년 기준] 최소 500 만원 권,	4) 월 정산한도,	[당도대비 1 배권,
<p>★ 추가가입비는 최초 계약 시 1회, 계약해결일 기준 30일 이내 인금.          ★ 연 사용료는 매년 후분로 재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말일까지 인금.          (약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 동안의 사용료로 인금).          ★ "초기 가입비" 및 "연 사용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454132-01-007214] / 예금주명 : 현대무대이타,          ★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의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0.953% (보증보험사 안내: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02-2051-2114),          - 신청페이지 [http://agency.insugate.co.kr/oin.php?insured=dsoupa].</p>			

5. 추가서비스 등록 정보 (※ 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1) 승주선 사 ,	[ ]	2) 승주선 사 ID ,	[ ]
3) 상품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지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		
4) 결제수단 상세정보,	[ ]		

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환불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정보 권 위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점수에 대해서는 현대무대 이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도장

3. 서비스등록정보	
상품 상세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과세,
신출 결제수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소액결제 <input type="checkbox"/> 카카오페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품권류 <input type="checkbox"/> 모바일결제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동전(KT결제통),

4. 비용납부 및 한도 정보 (※ 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1) 추가가입비 (VAT 포함),	[2만원,]	2) 연 사용료 (VAT 포함),	[1만원,]
3) 지급이행 보증보험,	[1년 기준] 최소 500 만원 권,	4) 월 정산한도,	[당도대비 1 배권,
<p>★ 추가가입비는 최초 계약 시 1회, 계약해결일 기준 30일 이내 인금.          ★ 연 사용료는 매년 후분로 재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말일까지 인금.          (약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 동안의 사용료로 인금).          ★ "초기 가입비" 및 "연 사용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454132-01-007214] / 예금주명 : 현대무대이타,          ★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의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0.953% (보증보험사 안내: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02-2051-2114),          - 신청페이지 [http://agency.insugate.co.kr/oin.php?insured=dsoupa].</p>			

5. 추가서비스 등록 정보 (※ 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1) 승주선 사 ,	[ ]	2) 승주선 사 ID ,	[ ]
3) 상품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지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		
4) 결제수단 상세정보,	[ ]		

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환불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정보 권 위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점수에 대해서는 현대무대 이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3. 신락 정보 작성</b>			
<b>3-(1) 위탁자 정보 확인</b> (신락 정보가 동일합니다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성명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2) 수탁자 정보 확인</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3) 신락관리인 정보 확인</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4) 수탁자 정보 작성</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b>3. 신락 정보 작성</b>			
<b>3-(1) 위탁자 정보 확인</b> (신락 정보가 동일합니다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성명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2) 수탁자 정보 확인</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3) 신락관리인 정보 확인</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소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실제 주소 기명)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b>3-(4) 수탁자 정보 작성</b>			
•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정 (종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종근적인 비거주자는 종근적용 기명)	<input type="checkbox"/>	합일 (종근적인 비거주적인 불응 기명)	<input type="checkbox"/>



[제출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 /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고객 확인서 기재 항목 전부.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제공받는 목적 : 공중합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제공받는 항목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한 의무가 있는 정보 일체.

-보유·이용기간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 ]월 [ ]일,  
대표자 : [ ] (서명),  
제소유자 : [ ] (서명),  
**도장** (Red circle stamp)

계약 담당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담당자명 : [ ] (서명)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위탁자명 : [ ] (서명)
	수탁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수탁자명 : [ ] (서명)
	신탁관리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신탁관리인명 : [ ] (서명)
	수익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명 : [ ] (서명)

- ◆ ㈜다우데이터는 상기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유효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다우데이터는 거래가 설립된 이후에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금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수할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불지할 의무를 지며, 불지 이전에 상기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합위에 대해서 ㈜다우데이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출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 /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고객 확인서 기재 항목 전부.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제공받는 목적 : 공중합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제공받는 항목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한 의무가 있는 정보 일체.

-보유·이용기간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 ]월 [ ]일,  
대표자 : [ ] (서명),  
제소유자 : [ ] (서명),  
**도장** (Red circle stamp)

계약 담당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담당자명 : [ ] (서명)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위탁자명 : [ ] (서명)
	수탁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수탁자명 : [ ] (서명)
	신탁관리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신탁관리인명 : [ ] (서명)
	수익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명 : [ ] (서명)

- ◆ ㈜다우데이터는 상기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유효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다우데이터는 거래가 설립된 이후에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금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수할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불지할 의무를 지며, 불지 이전에 상기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합위에 대해서 ㈜다우데이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도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계약 기간 : 전자계정결제  
제대행서비스 위탁 종료 시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 "갑"과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기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개  
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  
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  
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기재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수탁자 "을"
회사명 : [ ]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메이타
주소 :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대표이사 : [ ] (인)	대표이사 : 정복진 (인)

도장

도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계약 기간 : 전자계정결제  
제대행서비스 위탁 종료 시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 "갑"과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기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개  
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  
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  
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기재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수탁자 "을"
회사명 : [ ]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메이타
주소 :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대표이사 : [ ] (인)	대표이사 : 정복진 (인)

도장

도장

인사	인사		국적	[ ]
	대표이사	직명	직종	기타
회사의 재정상황 등	자산	공시장 <input type="checkbox"/> 뉴욕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NASDAQ <input type="checkbox"/> 런던증권거래소 인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비상	[ ]		
	재무정보	자본금	[ ]	
		연 매출액	[ ]	
		연 영업이익	[ ]	
	직원수	[ ]		
	주요 거래처	[ ]		
실제소유자 추가정보	직장명	[ ]	연중/부서	[ ]
	직장 연락처	[ ]	담당업무/직급	[ ]
	직장주소	[ ]		
	종류	가액	비고	
실제소유자 재산현황	[ ]	[ ]	[ ]	
	[ ]	[ ]	[ ]	

※ 실제소유자가 다름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의 추가정보 기재.

도장

인사	인사		국적	[ ]
	대표이사	직명	직종	기타
회사의 재정상황 등	자산	공시장 <input type="checkbox"/> 뉴욕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NASDAQ <input type="checkbox"/> 런던증권거래소 인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비상	[ ]		
	재무정보	자본금	[ ]	
		연 매출액	[ ]	
		연 영업이익	[ ]	
	직원수	[ ]		
	주요 거래처	[ ]		
실제소유자 추가정보	직장명	[ ]	연중/부서	[ ]
	직장 연락처	[ ]	담당업무/직급	[ ]
	직장주소	[ ]		
	종류	가액	비고	
실제소유자 재산현황	[ ]	[ ]	[ ]	
	[ ]	[ ]	[ ]	

※ 실제소유자가 다름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의 추가정보 기재.

[제출용] 추가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본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 항목 : 위 추가 정보 확인서 기재 항목 전부.
-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 제공받는 목적 : 공중합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 제공받는 항목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 일체.
- 보유·이용기간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 ]월 [ ]일

대표자 : [ ] (서명)

실제소유자 : [ ] (서명)

[첨부서류]

- 개인사업자·개인 1) 대표자(개인) 재직증명서  
2) 대표자(개인) 재산현황 증명서류.
- 법인사업자·단체 1)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2) 신용평가서  
3) 감사보고서.  
4) 정관.
- 실제소유자 1) 실제소유자 재직증명서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2) 실제소유자 재산현황 증명서류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 거액자금 원천 증명서류 등.

[제출용] 추가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본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 항목 : 위 추가 정보 확인서 기재 항목 전부.
-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 제공받는 목적 : 공중합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 제공받는 항목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 일체.
- 보유·이용기간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전자금융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 ]월 [ ]일

대표자 : [ ] (서명)

실제소유자 : [ ] (서명)

[첨부서류]

- 개인사업자·개인 1) 대표자(개인) 재직증명서  
2) 대표자(개인) 재산현황 증명서류.
- 법인사업자·단체 1)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2) 신용평가서  
3) 감사보고서.  
4) 정관.
- 실제소유자 1) 실제소유자 재직증명서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2) 실제소유자 재산현황 증명서류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 거액자금 원천 증명서류 등.